



Briefings of IMO Meeting

III 5 (24 -28 Sep. 2018)

BRIEFING STATUS

☒ *Flash*

No. IMO-0012-2018

(Sub-committee meeting only has 1 Flash News)

Subject: Newsflash of III 5

제5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III 5차)가 런던 IMO 본부에서 2018년 9월 24에서 28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III 5차 주요 논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PSC 활동과 절차의 조화로운 시행 (의제 5)

- 제31차 총회에서의 채택을 위하여 2017 항만국통제 절차서(Res.A.1052(27))에 대한 개정 초안이 완료되었으며, 동 결의서는 선박의 검사, 결함사항의 식별, 선박의 장비 및 선원에 대한 검사시의 일관성을 제공하기 위한 지침임. 작성된 초안의 추가 문구 검토 등을 위하여 작업반을 재개설 함
- ECDIS
 - NCSR 3차는 ECDIS의 S-52, S-57, S-63 및 S-64 기준의 시험 및 최신화 기한을 2016년 9월 1일에서 2017년 9월 1일로 연장함에 합의한 바 있음. 하지만, 일부 ECDIS 제조자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최신화를 수행할 수 없음이 식별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III 4차(2017)는 ECDIS의 최신화에 관련된 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ECDIS 최신화 적용일자를 유예하기로 합의하였으며, PSCO는 이에 관련된 문서가 기국 주관청으로부터 선박에게 발행되었는지 점검하고 동 문서가 없는 경우 PSCO는 기국주관청과 상의해야 함을 언급하는 III.2/Circ 문서를 발행하였음
 - 이후 시행된 NCSR 5차 및 MSC 99차에서 최신화 유예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이 보고되었고 MSC 99차에서 III.2/Circ 문서를 취소 하기로 하였음



Briefings of IMO Meeting

III 5 (24 -28 Sep. 2018)

BRIEFING STATUS

☒ *Flash*

No. IMO-0012-2018

(Sub-committee meeting only has 1 Flash News)

2. HSSC에 따른 검사지침 최신화 및 PSC 활동과 지침의 조화를 위한 조치 (의제 8)

○ HSSC 검사지침 최신화

- III 5차는 HSSC 검사지침 및 의무규정 목록에 관한 통신작업반의 결과보고서를 고려하였으며, 31차 총회의 채택을 위한 다음의 검사지침 개정안을 논의함:

- i. III Code의 협약상 의무 규정 목록(Res.A.1121(30)) 개정 및 최신화; 및
- ii. HSSC에 따른 검사지침(Res.A.1120(30))의 개정

○ 비자항무인(UNSP)바지선에 대한 MARPOL 협약의 검사 및 증서발급 요건 면제

- III 3차(2016)는 MEPC 69차에서 합의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자항무인바지선박에 대한 MARPOL 협약의 면제에 관련된 협약개정안 및 관련 지침서 초안을 개발하였음:

- i. 어떠한 면제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ii. 면제증서는 MARPOL 협약의 개별 부속서 별로 발행되어야 함;
- iii. MARPOL Annex IV 또한 검사 및 증서발급 요건의 면제에 포함되어야 함;
- iv. 기름기록부 관련 MARPOL Annex I의 17.1 규칙의 참조사항은 유지되어야 함; 및
- v. 지침서가 승인되고 나면, 이는 회람문서(Circular) 형태로 발행되어야 함

- III 5차는 UNSP바지선의 검사 및 증서발급 요건의 면제를 위한 MARPOL 부속서 1, 4, 및 6의 개정안 및 관련 지침서의 초안에 동의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통신작업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후 MEPC 74차에 경과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음.

- 1. 각 부속서 별 상이한 UNSP바지선의 정의에 대한 단일 정의 제공의 필요성
- 2. UNSP바지선의 검사 및 증서 발급 외 각종 기술적 요건들의 면제 가능성



Briefings of IMO Meeting

III 5 (24 -28 Sep. 2018)

BRIEFING STATUS

☒ *Flash*

No. IMO-0012-2018

(Sub-committee meeting only has 1 Flash News)

○ 수중검사 중의 타 베어링의 틈새간격 측정

- 현행의 HSSC 검사지침에 따라, 여객선의 경우 정기검사 시의 타 베어링의 틈새간격 측정은 수중검사에서는 수행될 필요가 없는 반면, 화물선은 수중검사 중 타 베어링의 틈새간격 측정이 이루어져야 함
- III 4차는 화물선의 수중검사 중의 타 베어링의 틈새간격 측정에 관한 요건을 삭제하면서 두 요건을 일치시키자는 제안사항을 고려하였으나, 수중검사 수행에 대한 안전 및 수중검사가 불가능한 디자인을 지닌 선박들에 대한 염려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SDC 5차 전문위원회의 회의적인 의견을 전달 받았으며 이에 III 5차에서 해당 제안사항을 반려하기로 하였음

○ BWM 협약의 검사지침

- 현재 3개의 BWMS 형식승인 기준에 대하여 논의 시간 부족으로 차기 III 6차 회의(2019)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통신작업반을 개설함

3. 항만수용시설의 부적절성 (의제 3)

○ 항만수용시설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검토

- III 4차에서는 유해한 화물잔류물 및 잔류물을 포함한 화물창 세정수를 수용할 수 있는 항만수용시설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및 수용시설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을 논의 후, 수용시설의 부적절성을 보고하여 줄 것을 회원국에 촉구하고, 사무국에게 항만수용시설에 대한 GISIS 모듈 개선을 위한 과정을 차기 III 5차로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이에 사무국은 III 5차에서 MARPOL 체약국 등에서 제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항만수용 시설 부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보고된 불충분한 항만수용시설에 대하여 회원국의 적절한 조치와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촉구함



Briefings of IMO Meeting III 5 (24 -28 Sep. 2018)

BRIEFING STATUS

☒ *Flash*

No. IMO-0012-2018

(Sub-committee meeting only has 1 Flash News)

4. 사고 조사 (의제 4)

○ 사고조사 및 해양안전조사 보고서의 분석에서 얻은 교훈

- III 5차는 사고조사에 관한 통신작업반의 보고서를 분석 및 검토하였으며, 해양안전조사 보고서의 분석에서 얻은 교훈의 최종안을 승인하였음. -끝-

P.I.C:

문서인 / 선임검사원

협약업무팀

Tel: 070 8799 8335

Fax: 070 8799 8339

E-mail: convention@krs.co.kr

협약업무팀장

Disclaimer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